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0
------------	-------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의자 : 박완주 · 김영춘 · 이개호  
윤관석 · 송갑석 · 오영훈  
윤준호 · 이찬열 · 김현권  
서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하여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7조의3).

라.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7조의4).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 정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함(안 제47조의5).

바.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47조의6).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촌·어항재생”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단서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3.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⑤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어촌·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어항재생사업 운영·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 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7(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등)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47조의8(준용 등)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3제3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보고, 제12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본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보고, 제14조 중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보고, 제15조 중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본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지정권자”를 “제4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로 한다.

제52조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어촌·어항개발사업 및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를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어촌·어항재생</u> ”이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u>&lt;신 설&gt;</u>	10. “ <u>어촌·어항재생사업</u> ”이란 어촌·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u>&lt;신 설&gt;</u>	제4조(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u>
5. · 6. (생 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 공공단체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 6.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

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기본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신 설>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  
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기본  
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

<신 설>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3.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⑤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어촌·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  
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  
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을 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  
을 위한 조사·연구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어항재생사업 운영·관  
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어항

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7(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등) ① 어촌·어항재생사업  
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  
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  
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  
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  
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신 설>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제47조의8(준용 등)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 제4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3제3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보고, 제12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본다

②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보고, 제14조 중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보고, 제15조 중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본다.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  
-----  
-----  
제4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  
-----  
-----



<p>종합개발사업시행자, <u>어항개발</u>  <u>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u>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         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          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          다.</p> <p>③ (생략)</p>	<p>----- <u>어항개발</u>  <u>사업시행자, 어촌·어항재생사업시</u>  <u>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u>-----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